

[다자녀가정 감면 / Q&A]

이건, 이렇습니다.



1. 감면대상과 관련한 Q&A

Q1.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적용대상은?

A. 신청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반드시 부산시에 등재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 대상인데, 만약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는 경우라도 부산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주민등록이 부산시에 되어 있지만 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 사정에 의해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가?

A. 주민등록지가 부산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감면대상이 됩니다. 단,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조손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적용대상은?

A. 신청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반드시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주민등록표상 관계가 “손자 또는 손녀”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조손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한정된 이유는?

A. 부산시에 거주하는 손자·손녀가 여럿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손자·손녀로 한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조손가정의 지원대상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Q5. 감면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으로 지정한 이유는?

A.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조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대상에 해당되어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Q6. 만 18세 미만의 자녀 중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는 1명이고 나머지 자녀 2명은 조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은 어디에 해야 하는가?

A. 이 경우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감면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조부모와 실제 1명의 자녀도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며, 조부모와 3명의 손자·손녀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는 시점에서만 조부모 거주지에 감면이 가능합니다.

Q7.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인 경우 수도요금 감면이 되는지?

A.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감면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Q8. 전 배우자와 이혼(사별, 별거 중 포함)하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과 현 배우자의 자녀 1명(만 18세 미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가?

A. 감면 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어 관계가 “자” 그리고 “배우자의 자” 로 표기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Q9. 부모가 없는 만 18세 미만인 조카(친척) 3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가?

A.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산시의 감면 기준은 부모가 있는 다자녀가정과 부모가 없는 경우는 조손가정으로 한정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Q10.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에 의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감면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중인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야 합니다.

Q11. 다문화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국적 소유자인데 감면대상이 되는지?

A.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 상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Q12. 외국 국적자도 감면대상인가?

A. 감면 대상은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이중국적 포함)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부모 모두 외국 국적자라서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3.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3명 중 첫째가 만 18세가 되면 감면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A. 감면대상 자녀의 생년월일을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만 18세가 된 경우 2자녀 이하가 되어 자동으로 감면해지가 됩니다.

Q14.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3명 중 첫째가 만 18세가 되고 막내가 새로 태어난 경우 신청을 해야 하는가?

A. 네, 새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자녀 중 1명이 만 18세가 된 경우 2자녀 이하가 되어 자동으로 감면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막내가 새로 태어나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다시 3명이 되어 감면대상이 됨으로 반드시 다시 신청이 있어야만 감면이 됩니다. 이 경우는 상수도 고객센터 ☎051-120로 전화 또는 해당 수도사업소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15. 3명의 자녀로 인해 감면을 받고 있는데 자녀 중 학교 등의 사유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못하는 경우다. 수도요금 감면이 되는가?

A.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의 요금부과는 실제 부산의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행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상 자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해당 가정의 수도물 사용이 당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할 수 있어 제한을 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수도요금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에 한해서만 감면하고 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면금액과 관련한 Q&A

Q16.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금액은?

A. 1가구당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2017.12월 기준단가로 상수도 6,600원, 하수도 3,900원, 물이용부담금 1,500원이며, 1가구당 최대 월 12,000원, 연 144,000원이 감면됩니다.

단, 월 10㎥에 미달한 사용량인 경우(월 8㎥ 사용 시) 상수도 4,800원, 하수도 3,120원, 물이용부담금 1,200원으로 총 9,120원만 감면됩니다.

Q17.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수급자로 현재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감면이 되는가?

A. 중복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Q18.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수도계량기가 하나인 경우 감면요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A. 세대별 요금 풀이를 위해 설치된 (사제)개별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사용량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 월 12,000원(격월고지 인 경우 20㎥, 2개월분 2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과하면 되고, 개별 계량기가 없는 경우는 총 부과 금액에서 월 12,000원(격월고지 인 경우 20㎥, 2개월분 24,000원)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부과 안내서에는 감면금액을 공제한 후 부과된 금액이므로 요금산출 시 감면금액에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셔야 합니다.

Q19.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어떻게 감면요금을 산정해야 하는가?

A. 세대별 개별계량기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출한 후 10㎥에 해당하는 금액(월 12,000원)을 공제한 후 관리비청구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수도요금 부과 안내서에는 감면금액을 공제한 후 부과된 금액이므로 요금산출 시 감면금액에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하셔야 합니다.

3. 감면신청과 관련한 Q&A

Q20. 언제부터 감면신청이 되는가?

A. 감면 시행일은 2018년 2월 1일이며, 2018년 1월 15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행정정보공동망 이용에 동의한 후 제출하시면,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감면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Q21. 신청일에 따라 적용 납기가 다른가?

A. 전산처리 일정이 매월 정해져 있어 신청일에 따라 적용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월 11일 ~ 당월 10일까지 해당 수도사업소 접수분에 한해 당월 납기분에 적용되며, 당월 11일 ~ 다음월 10일까지 해당 수도사업소 접수분은 다음월 납기분에 감면 적용 됩니다.

Q22.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A. 원칙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청하여야 하나 부득이 어려운 경우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다른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감면대상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만 18세 미만 자녀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Q23. 만 18세 미만의 2자녀가 있는데 조만간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A.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에 따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Q24.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집주인이 대신 신청해도 되는지?

A. 집주인이 대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청할 시간이 없는 경우는 상수도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자녀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수도사업소로 제출(팩스가능)하셔야 합니다.

Q25. 감면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A.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과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관리실 또는 상수도 고객센터 문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면신청서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18세 미만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로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Q26. 출퇴근 관계로 바로 신청이 어려운데,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도 되는지?

A. 2018년 1월 15일부터 언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혜택은 신청서가 해당 수도사업소에 접수된 경우 적용되며, 이전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으므로 2018년 2월납기분에 감면요금을 적용받으시려면 2018년 2월 10일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적용일자 안내

- 전월 11일 ~ 당월 10일 해당 수도사업소 접수분 당월납기분 적용
- 당월 11일 ~ 익월 10일 해당 수도사업소 접수분 익월납기분 적용

Q27. 직장과 가까운 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합니다. 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이송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 홈페이지(<http://www.busan.go.kr/wate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관계가 어려운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수도사업소로 제출(팩스가능)하셔야 합니다.

Q28. 주민센터에 감면신청을 하면 이후 어떻게 처리 되는가?

A.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수도사업소로 이송(팩스 또는 스캔 등)하면, 해당 수도사업소에서는 접수처리, 전산입력,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Q29. 신청이 늦었지만 소급해 줄 수는 없는가?

A.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 21조(사용요금의 감면신청)에 의거 감면신청서에 신청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Q30. 감면 해지 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감면 혜택이 중지 되는가?

A. 「수도요금은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9조(요금적용 기준일)에 의거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전 접수분은 그 달의 수도요금에 적용되어 감면이 중지되고, 11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달 요금에 감면이 중지됩니다.

Q31. 감면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A. 감면 해지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감면 혜택 종료 예정일 이후에 받으신 감면액에 대해 전액 추징조치 되오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상수도 고객센터(☎051-120)로 해지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내용과 관련한 Q&A

Q32.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A.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시 타 구·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 고객센터로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부산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수도 고객센터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 거주지에서 부당하게 감면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환급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3.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이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다자녀가정 감면은 가정용 세대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옮긴 후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면 대표업종은 일반용이지만 겸업종이 가정용으로 적용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4. 영업용 점포이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영업용 점포이더라도 주거가 가능한 경우는 실제 주민등록을 옮긴 후 가구분할 신청을 한 경우 겸업종이 가정용으로 적용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5.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받은 세대인데 수도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A. 가족사랑카드 발급기준은 3자녀 중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년의 자녀가 있어도 가족사랑카드 수혜자가 되고 있어 상수도본부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녀는 제외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7. 7월 가족사랑카드 대상자 25,656세대 중 21,280세대(80%)에 대해 감면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Q36.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감면세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A. 감면세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감면여부는 상수도 고객센터나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Q37. 타 특·광역시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을 하는가?

A. 2017년 11월 현재 울산시의 경우 일반회계(시비)의 지원을 받아 감면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하수도(일반회계)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시만 유일하게 상·하수도 특별회계(자체 수입예산)에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38. 부산시는 열악한 재정에도 왜 다자녀를 감면해 주는가?

A.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극복 및 부산시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자체 재원으로 수도요금(상·하수도요금·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면기관 : 상수도(상수도본부), 하수도(시 생활하수과), 물이용부담금(낙동강관리위원회)

Q39. 다자녀가정의 감면세대와 감면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A. 2017. 8월말 기준으로 다자녀가정 감면세대는 약 21,280 세대이며, 예상 감면액은 연간 3,064백만원(상수도 1,685백만원, 하수도 996백만원, 물이용 부담금 383백만원)입니다.

Q40. 감면신청서에 있는 동의는 꼭 해야 하는가?

A. 감면신청서에는 세가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시면 담당자가 관련 확인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감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상수도본부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당 감면금액에 대한 반환 동의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